

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제안이유

- 공직자윤리법이 개정·공포됨(2001. 1. 26 법률 제6388호)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에 맞추어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2조).

개정조례안 : 별 첨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 첨

-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(입법)예고 : 해당없음

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교육자 또는”을 “교육자,”로 하고, “덕망이 풍부한자”다음에 “또는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감사담당관실
입 안 자	직 성 위 명	감사담당관 유 동 열
	직 성 위 명	감사담당 박 옥 만
	담 당 자 전 화	이 세 영 (행정 2071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3인의 위원은 법관, <u>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<삼 입></u>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2.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1명과 시 소속공무원(이하 “소속공무원”이라 한다)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조 (구성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-----<u>교육자, 또는 시</u> <u>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</u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